

파주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
----------	-----

제출년월일 : 2001. 11. 13.

제출자 : 파주시장

□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시가 권장하는 사무중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무 21건중 수정 4건, 삭제 15건, 신설 2건 등을 개정하고자 함.

1. 수 정(4건)

- 가.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매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의료보호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2. 삭 제(15건)

- 가. 시세완납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 미과세증명의 발급
- 나.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유기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마. 이·미용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바. 목욕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사. 여인숙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아. 농기계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자. 농가대여 양곡대여 및 수납

- 차.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 및 지도·점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카.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타. 토지출입에 관한 사항
- 파. 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하.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5. 신 설(2건)

-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127
입 안 자	총 무 과 장	홍 덕 기
	시 정 담 당	백 철 현
	담 당 자	김 영 준

[별 표]

위 임 사 무 명

[총무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제59조	읍·면·동

[세무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고지서 교부 ② 체납세 징수독려	지방세법 제25조	읍·면
2	○ 시세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납부서 교부		동법 제3조, 제4조	읍·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증명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읍·면
2	○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보호증 연도별 제사용 확인 ②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③ 의료보호증 회수	의료보호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읍·면

[허가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③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착공신고수리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연면적200 m ² 미만인 건축물) 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다만, 건축법제9조, 제15조제2항, 제72조,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제9조및시행령제11조 동법 제15조제2항 동법 제72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69조	읍·면
2	○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읍·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① 차량등록원부의 기재 사항 변경(주소)위반 과태료부과·징수 ②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 시행령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내지 제103조 자동차관리법제11조 동법제84조제2항제2호 동법제48조,제49조 제84조제제2항제2위2호	읍·면 읍·면·동 읍·면

신 구 대 비 표

현			개				안		
소 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별 규	수 입 기 관	소 관 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별 규	수 입 기 관
총무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연가, 병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읍·면·동	총무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인장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② 개폐업 신고 ③ 신고사항 변경신고 ④ 업소지도 감독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인장법제3조 시행령제3조	읍·면·동	시민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시세완납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미과세증명의 발급 3. 시세자진납부에 따른 납부서 교부	① 고지서 교부 ② 체납세 징수독려	지방세법 제25조 동법제3조, 제4조	읍·면·동	세무과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제3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읍·면
기획실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연신고 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 ②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③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폐업 ④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교육	공연법제14조 음반비디오물 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제9조 동법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읍·면·동	문화 체육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소 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소 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사 회 복지과	3. 유기자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기자업 허가 (휴·폐업, 재개업) ② 유기자업 허가사항 변경 ③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④ 행정처분	공중위생법 제4조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읍·면·동	문화 체육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① 이·미용업 신고 (휴·폐업, 재개업) ② 이·미용업 신고사항 변경 ③ 영업자 지위승계 ④ 행정처분 ① 목욕장업 신고 (휴·폐업, 재개업) ② 목욕장업 신고사항 변경 ③ 영업자 지위승계 ④ 행정처분	공중위생법 제4조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4조,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4조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읍·면·동	사 회 복지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사 회 복지과	3. 여인숙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여인숙업 신고 (휴·폐업, 재개업) ② 여인숙업 신고사항 변경 ③ 영업자 지위승계 ④ 행정처분	여인숙업법 제4조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읍·면·동	사 회 복지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① 이·미용업 신고 (휴·폐업, 재개업) ② 이·미용업 신고사항 변경 ③ 영업자 지위승계 ④ 행정처분 ① 목욕장업 신고 (휴·폐업, 재개업) ② 목욕장업 신고사항 변경 ③ 영업자 지위승계 ④ 행정처분	공중위생법 제4조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4조,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4조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읍·면·동	사 회 복지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소 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소 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사 회 복 지 과	4. 매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화장신고	매장및포장 에관한법률제 5조제1항			1. (현행제4호와 같음)	①~②(현행과 같음)	장사등에관한 법률제8조 시행규칙 제2조						
	5.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 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증명 ①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②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③ 의료보호증 회수	의료보호법제 7조,시행규칙 제6조제2항 동법제7조및 시행규칙제5 조제3항, 제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읍·면·동	사 회 복 지 과	2. (현행제5호와 같음)	①~③(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읍·면					
농축산과	1. 농기계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기계류 사용허가 및 취소	과주시기계류 관리조례 제3조	읍·면	농축산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농가대여 양곡대여 및 수납	① 대여 및 수납	농가대여양곡 전용에관한법 률제3조											
기 업 지 원 과	1.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 및 지도·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신고 수리 ! ②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신고수리 ③ 사용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 지도·감독 - 행정(과태료)처분 ④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액화석유가스 의안전및사업 관리법제29조 동법제14조 동법제35조 동법제32조	읍·면	기 업 지 원 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소 부	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수 임 기 관	수 임 기 관	수 임 기 관
소 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건설과	1.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정용 및 정용 기간연장 허가 ②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③ 도로정용료 부과징수 ④ 점도구역 관리	도로법제40조 제1항및시행령제24조 시행령제24조 동법제43조 동법제50조	도로법제40조 제1항및시행령제24조 시행령제24조 동법제43조 동법제50조	도로법제40조 제1항및시행령제24조 시행령제24조 동법제43조 동법제50조	도로법제40조 제1항및시행령제24조 시행령제24조 동법제43조 동법제50조	도로법제40조 제1항및시행령제24조 시행령제24조 동법제43조 동법제50조	도로법제40조 제1항및시행령제24조 시행령제24조 동법제43조 동법제50조	도로법제40조 제1항및시행령제24조 시행령제24조 동법제43조 동법제50조	도로법제40조 제1항및시행령제24조 시행령제24조 동법제43조 동법제50조	도로법제40조 제1항및시행령제24조 시행령제24조 동법제43조 동법제50조	건설과	건설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도시과	1. 토지출입에 관한 사항	① 토지출입 허가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도시과	도시과	(삭 제)	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주택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③ 용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착공신고수리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철거 (다만, 건축법제9조, 제15조제2항, 제72조,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한다) ① 농지전용신고	건축법제9조 시행령11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72조 동법제16조 동법제69조	건축법제9조 시행령11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72조 동법제16조 동법제69조	건축법제9조 시행령11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72조 동법제16조 동법제69조	건축법제9조 시행령11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72조 동법제16조 동법제69조	건축법제9조 시행령11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72조 동법제16조 동법제69조	건축법제9조 시행령11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72조 동법제16조 동법제69조	건축법제9조 시행령11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72조 동법제16조 동법제69조	건축법제9조 시행령11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72조 동법제16조 동법제69조	건축법제9조 시행령11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72조 동법제16조 동법제69조	허가과	허가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읍·면
농축산과	2.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신고	농지법제37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제37조	농축산과	농축산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읍·면

현				행				개				정				안	
소 관 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입 기 관	소 관 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입 기 관	소 관 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입 기 관			
교 통 행 정 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교 통 행 정 과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④ 사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신고사한 변경신고(사용본거지) ⑧ 차량등록원부의 기재 사항 변경(주소)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⑨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및 번호판부착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령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99조내지 제103조	읍·면	교 통 행 정 과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④ 사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신고사한 변경신고(사용본거지) ⑧ 차량등록원부의 기재 사항 변경(주소)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⑨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및 번호판부착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령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99조내지 제103조	읍·면			
도 시 과	1. 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급수공사의 승인신청 ! ②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③ 급수장치 사용개선 및 중지 ④ 급수중지 및 폐전 ⑤ 급수사용료의 부과 징수 ⑥ 급수용도 변경 ⑦ 시설소화전 사용허가 ⑧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파주시수도료 수조례제6조 동조례시행 규칙제11조 동조례제20조 동조례제25조 동조례제20조 동조례제20조 동조례제20조 동조례제20조	읍·면	상 하 수 도 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도 시 과	1. 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파주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종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시가 권장하는 사무중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사무 21건중 수정 4건, 삭제 15건, 신설 2건 등을 개정하고자 함.

1. 수 정 (4건)

- 가.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매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의료보호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2. 삭 제 (15건)

- 가. 시세완납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 미과세증명의 발급
- 나.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유기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마. 이·미용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바. 목욕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사. 여인숙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아. 농기계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자. 농가대여 양곡대여 및 수납
- 차.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 및 지도·점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카.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타. 토지출입에 관한 사항
- 파. 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하.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신 설 (2건)

-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

□ 검토의견

지 방 자 치 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2·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시가 권장하는 사무중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사무중 21건에 대하여 수정4, 삭제15, 신설2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음.

- 다만, 동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조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